

금연이슈 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he 8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WHO FCTC 당사국 총회,
가열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02 인포그래픽
가열담배도
일반담배처럼 규제하라!

04 이달의 이슈
WHO FCTC 당사국 총회,
가열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12 이달의 지표
전자담배
평생사용률

OCTOBER 2018
Vol. 61

10

가열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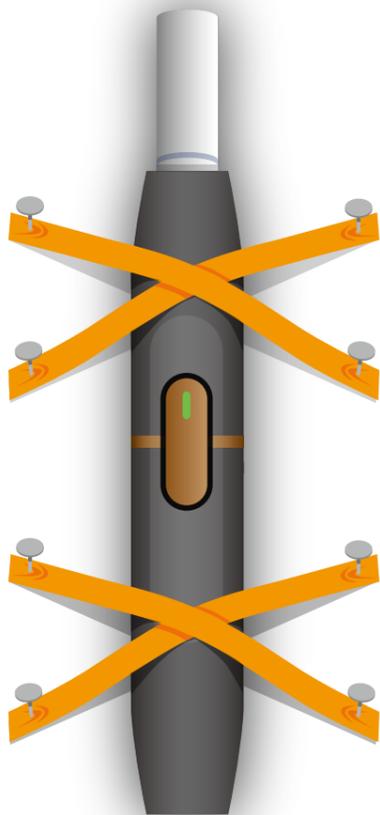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차 당사국 총회 주요결과

※ 출처
- WHO, (2018).

가열담배 등 신종담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결정문

가열담배제품 역시 담배제품 → WHO FCTC 조항 적용 대상!

가열담배제품 및 이들 제품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기기장치와 같은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으로 인한 위협을 다룰 때 WHO FCTC상의 의무를 상기하고, 국내법 및 WHO FCTC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우선시할 것을 고려



- ✓ **금연구역법의 범위 확대 및 이들 제품에서의 적용**
(배출물에서의 노출로부터 보호 및 WHO FCTC 제8조)
- ✓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에 관한 건강 관련 입증되지 않은 주장 방지**
- ✓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조치 적용**
(WHO FCTC 제13조)
- ✓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성분 공개**
(WHO FCTC 제9조 및 제10조)
- ✓ **경우에 따라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촉, 판매 및 사용을 제재 또는 금지 가능**
(국내법)
- ✓ **이들 제품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기기장치에도 상기 기술된 조치 적용**

WHO FCTC

제8차 총회 주요사항 정리

- 기간 : 2018. 10. 1.(월) ~ 10. 6.(토)
- 장소 : 스위스 제네바
- 참석규모 : 총 **148**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 관련 정부 간 기구, 총회 참관인 자격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등 **1,200**여 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

■ 주요 결정문(총 25개 의제 논의 결과 24건의 결정문 채택)

WHO FCTC 이행 강화를 위한 중기전략 채택

오락매체 내 담배 묘사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결정

가열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결련과 동일한 규제 적용** 촉구

담배업계의 **담배규제 저해활동 근절**을 위한 노력 촉구

※ 회의 참석자 대상 담배업계와의 이해관계확인서(Declaration of Interest) 제출 의무화, FCTC 사무국 및 총회 임원도 이해관계확인서 제출 필수

■ 제9차 당사국 총회 2020년 **네덜란드** 개최 예정

CONTENTS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04

이달의 이슈

WHO FCTC 당사국 총회, 가열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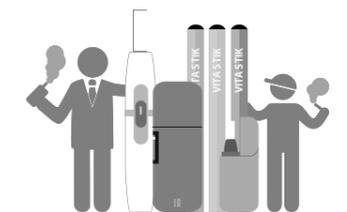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당사국들이 모여 그간의 담배규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당사국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통해 앞으로의 담배규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봅니다.

12

이달의 지표

전자담배 평생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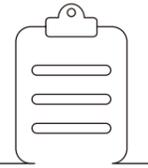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청소년 전자담배 평생사용률은 2015년에 10.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유사제품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 만큼 향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에 큰 폭의 감소를 기대해 봅니다.

WHO FCTC 당사국 총회, 가열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The 8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당사국들이 모여 그간의 담배규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당사국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나 여덟 번째로 열린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통해 앞으로의 담배규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WHO FCTC 당사국 총회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WHO FCTC)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2005년 이를 비준한 당사국이 40개가 넘어 정식 국제조약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현재 협약 당사국은 181개국으로, 국제연합(UN) 출범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한 조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WHO FCTC는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중보건의 우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담배 사용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피해를 줄이고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이다. 당사국 총회는 WHO FCTC의 집행부로서, 협약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의정서나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는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협약의 당사국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이다. 협약 발효 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8년부터는 격년으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왔는데, 2012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5차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 최초의 의정서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담배업계의 담배규제 정책 저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도 발표되었다. 이후 2014년에 러시아에서 열린 제6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창진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장직을 수행하여 담뱃값 인상에 관한 협약 제6조 가이드라인,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의 예방 및 규제에 관한 결정문 및 협약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영향평가 수행이 결정되는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 2016년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성(性) 인지적 담배규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정문을 상정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먼저, 제8차 당사국 총회가 WHO FCTC의 과거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된 대표적인 의제는 바로 담배회사가 담배규제를 비롯한 공중보건 정책을 저해하는 활동을 막기 위한 WHO FCTC 제5조3항의 이행 강화에 관한 의제이다. WHO FCTC 제5조3항은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비롯한 공중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0년 전인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현존하는 총 9개의 가이드라인 및 정책권고안 가운데 두 번째로 채택될 만큼 협약 당사국들 간에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공유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조항의 이행뿐만 아니라 담배규제 정책 설계, 개발, 추진, 및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범부처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 외 정부 부처나 국회 등에서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활동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에 있다. 이에 제8차 총회에서는 협약 제5조3항의 보다 실효적인 이행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의 모든 조항 이행에 제5조3항을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2008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제5조3항 가이드라인을 최신화하여 협약 당사국들이 담배업계의 변모하는 로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담배업계의 담배규제 정책 저해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였다.

기준에 채택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협약의 재도약을 논의한 또 다른 의제는 바로 오락매체 내 담배제품 묘사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의제이다. 담배제품의 광고·판촉·후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시 10년 전인 2008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으로, 특히 가이드라인의 부록으로 협약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제품 광고의 직접적 및 간접적 형태를 나열하고 있다. 문제는 담배광고 및 판촉 활동이 이루어지는 채널과 방식이 지난 10년간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협약 제13조는 포괄적인 담배광고·판촉·후원을 규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광고 및 판촉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 내에서의 활동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고 및 판촉 행위는 블록버스터 영화,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위성방송 등 국경의 의미가 없는, 그리고 전파와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 매체는 초국경적 특성과 오락성으로 인해 청소년이 매우 높은 확률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들 신종 오락매체에 담배제품 혹은 담배를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하면 청소년이 무의식적으로 담배 사용에 호기심을 갖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 담배 사용을 시작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8차 총회에서는 오락매체 내 담배 묘사를

역대 WHO FCTC 당사국 총회 개최 주요 결과

구분	기간	장소	참여국	주요 결정사항
1차	2006. 2. 6. ~2. 17.	스위스 제네바	113개	· 협약 사무국운영 및 예산운용규칙 채택 · 이행보고서 개발 논의 · 의정서 개발 논의 · 제8조·제9조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
2차	2007. 6. 30. ~7. 6.	태국 방콕	146개	· 제8조 가이드라인 채택
3차	2008. 11. 17. ~11. 22.	남아공 더반	129개	· 제5.3조 가이드라인 채택 · 제11조 가이드라인 채택 · 제13조 가이드라인 채택
4차	2010. 11. 15. ~11. 20.	우루과이 몬타 델 에스테	134개	· 제9조·제10조 부분적 가이드라인 채택 · 제12조 가이드라인 채택 · 제14조 가이드라인 채택
5차	2012. 11. 12. ~11. 17.	대한민국 서울	136개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 서울선언문 채택 · 제9조·제10조 부분적 가이드라인 채택
6차	2014. 10. 13. ~10. 18.	러시아 모스크바	137개	· 제6조 가이드라인 채택 · 제17조·제18조 정책권고안 채택 · 모스크바선언문 채택 · FCTC 발효 10주년 영향평가 수행 결정
7차	2016. 11. 5. ~11. 13.	인도 델리	134개	· 협약 발효 10주년 기념 WHO FCTC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결과 발표 · 제9조·제10조 담배성분 규제 및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채택 · 담배규제전략 개발의 성(性) 인지적 요소 고려, 오락매체에서의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등 신규 의제 논의

제8차 당사국 총회, WHO FCTC의 재도약을 노리다

2018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당사국 총회는 총 181개 협약 당사국 중 148개 당사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당사국이 참여한 총회로 기록되었다. 특히 제8차 총회는 WHO FCTC의 과거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총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총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규제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WHO FCTC 제13조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 총회 때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오락매체 내 담배모사에 관한 전문가 그룹 권고

- (1) 모든 협약 당사국이 협약 제13조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사국은 현행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법령이 영화, 인터넷, 스트리밍 매체, 구독 매체 및 디지털 게임 매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정해야 한다. 당사국이 초국경 담배광고·판촉·후원과 오락매체 내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협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독려한다. 당사국은 협약 제13조 이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험 및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 (2) 현존하는 협약 제13조 가이드라인은 유효하다.
- (3) 매체 소비의 주요 변화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협약 제13조 가이드라인의 부록과 같은 당사국의 협약 이행 지침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4) 당사국은 오락매체 내 담배모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배업계에게 담배 광고·판촉·후원 관련 모든 지출내역 공개, 담배를 묘사하는 자료에 건강 및 내용에 관한 경고, 모든 오락매체에서의 담배 브랜딩 금지, 대중에 노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경고그림 등 포장규제 준수, 유적비디오 및 비디오 게임 등 오락매체에 연령제한 도입 등의 입법 또는 행정적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담배를 판촉하는 영화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를 금지해야 한다.
- (5) 입법적 조치에 더하여 당사국이 오락매체, 특히 청소년이 소비하는 오락매체 내 담배 형상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체 업계와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
- (6) 시민단체는 오락매체 내 담배모사의 모니터링 및 보고 활동 등을 통해 상기 법령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국은 시민단체가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위반사례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 (7) 당사국이 WHO FCTC 이행보고서에 상기 권고사항들의 시행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치를 합의한 의제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WHO FCTC 중기 이행전략 채택과 신종 및 신흥담배제품 규제에 관한 의제이다.

먼저 WHO FCTC 중기 이행전략(Midterm Strategy Framework)는 2025년까지 WHO FCTC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기본적으로는 당사국 총회, 협약 사무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협약 이행 지침 및 2개년 업무계획 토대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그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자국 내 협약 이행 추진을 위한 중기 전략으로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HO FCTC 중기 이행전략에서는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담배 만연으로부터 자유’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WHO FCTC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이행을 통해 담배소비로 인한 건강,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피해와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현 세대 및 미래세대를 보호할 것을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의 총괄목표는 비전연성질환 예방 및 규제를 위한 WHO 글로벌 실행 계획과 연동하여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담배 사용률 30% 감소로 설정하였다.

향후 7년의 협약 이행 틀을 규정한 중기 이행전략의 채택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번 제8차 당사국 총회의 핵심은 바로 당사국 총회가 만장일치로 가열담배(Heated Tobacco Product)를 비롯한 신종 및 신흥 담배제품을 쫓아내고 동일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 결정문을 채택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WHO FCTC 당사국 총회는 지금까지 쫓아낸 외 담배제품, 즉 물담배 및 각종 무연담배에도 쫓아내고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그 근간에는 이들 제품도 엄연히 WHO FCTC상에서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는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가열담배의 경우 무연담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연소가 되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FCTC에 의한 담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FCTC상의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약 당사국들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가열담배가 지금까지의 담배규제 추진 노력을 위협하는 존재이며, 가열담배의 사용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약 당사국이 만장일치로 가열담배에 WHO FCTC의 주요 조항을 적용하여 규제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담배뿐만 아니라 가열담배의 필수적인 구성품 중 하나인 기기장치 또한 연관된 협약 조항, 특히 광고 및 판촉 관련 조치의 적용이 시급하다는 데에 합의를 이루었다.

**제8차 당사국 총회,
담배규제의
미래를 준비하다**

WHO FCTC 제8차 총회는 기존에 결정 및 채택된 가이드라인의 검토 및 개정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였다. 특히 협약의 이행 및 담배규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의제 6.3.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

당사국 총회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특히 협약 제6조(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제7조(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조치), 제8조(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제9조(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제10조(담배제품의 공개 규제), 제11조(담배제품의 패키징 및 라벨링), 및 제13조(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을 상기하고,

제6차 당사국 총회에 제출된 신종 담배제품의 진화와 관련 마케팅 전략에 관한 WHO 보고서(FCTC/COP/6/14)와 이들 제품의 독성, 중독성, 공중보건에의 인식 및 잠재적 영향을 포함하는 보고서상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확인하고,

결정문 FCTC/COP7(14)이 특히 WHO에 'Heat-not-burn' 담배제품과 같은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의 시장 발달과 사용을 모니터링 및 조사하고 이후 당사국 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청한 것을 상기하고,

가열담배제품의 시장 발달을 다루고 있는 협약 제9조 및 제10조 관련 WHO 보고서(FCTC/COP/8/8)를 확인하고,

가열담배제품이 '위해저감', '기존 궤련담배보다 덜 유해한', 그리고 기존 궤련담배의 흡연을 대체하는 무연(Smoke-free)제품이라는 주장으로 판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열담배제품이 담배제품이고 따라서 WHO FCTC 조항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열담배제품의 특징이 제품의 정의 및 분류, 배출성분 등과 관련하여 규제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WHO FCTC의 포괄적 이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부 당사국은 가열담배제품과 관련하여, 특히 금연구역법 적용고려와 같은 다양한 규제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최신형 가열담배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소수의 당사국만이 제품 규제의 경험이 있거나 가열담배제품 기기장치 규제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가열담배제품의 분류 및 규제에 관해 당사국을 지도할 수 있는 지침이 제한적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약 제9조 및 제10조 관련 기술적 사안에 관한 보고서(FCTC/COP/8/8)와 관련 자료들에 관한 정보, 특히 가열담배제품의 시장 모니터링에 관한 자료에 대해 WHO에 감사를 표한다.
2. 협약 사무국에게 WHO와, 적절한 경우 WHO 담배실험네트워크(TobLabNet)에 다음의 사항을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
 - (a)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 특히 가열담배제품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독가능성, 인식 및 사용, 매혹도, 흡연 시작 및 금연에 미치는 영향, 판촉 전략 및 영향을 포함하는 마케팅, 위험저감에 관한 주장, 제품의 변이성, 당사국의 규제 경험 및 모니터링 사례, 담배규제에의 영향 및 연구 필요분야에 관해 과학자, 담배업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 및 담당 국가기관과 함께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차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고, 본 결정문의 문단 5에 기술된 목표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잠재적 정책 권고안을 제안
 - (b) 배출성분의 분석 포함,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의 화학적 및 물리적 과정 조사

- (c) 현존하는 성분 및 배출물 표준분석법(SOP)의 가열담배제품 적용 또는 활용 가능 여부 평가
- (d) 적절한 경우, 이들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법 권고

3. 협약 사무국에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 (a) 이들 제품이 WHO FCTC, 특히 담배 연기 및 정의/용어에 관한 조항과 가이드라인들의 포괄적 적용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 및 해당 가이드라인들의 적용 필요성 고려
- (b) 적절한 경우, 규제 노력과 새로운 제품 분류 정의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가열담배제품과 같은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의 적합한 분류에 대한 자문

4. 협약 당사국은 WHO 보고서(FCTC/COP/8/8)에 주목한다.

5. 협약 당사국은 가열담배제품 및 이들 제품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기기장치와 같은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으로 인한 위협을 다룰 때 WHO FCTC상의 의무를 상기하고, 국내법 및 WHO FCTC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우선시할 것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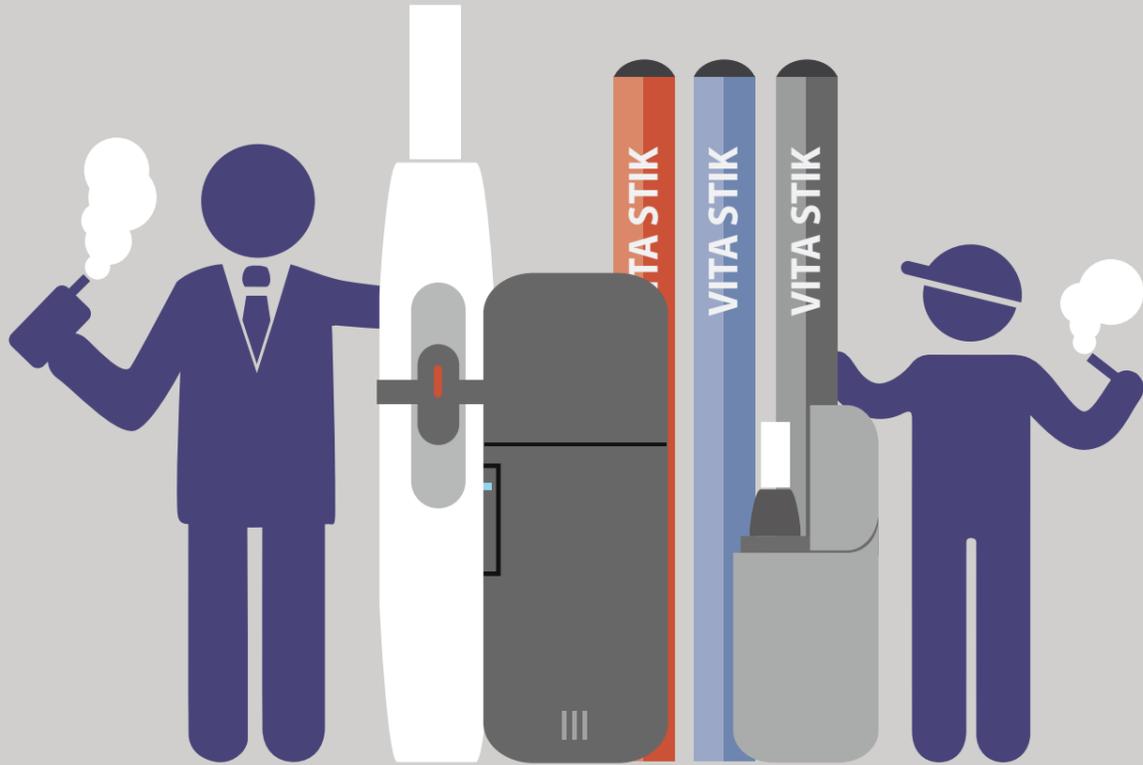
- (a)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 사용시작 예방
- (b) 이들 제품의 배출물에서의 노출로부터 보호 및 WHO FCTC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법의 범위를 명백하게 확대하여 이들 제품에도 적용
- (c)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에 관한 건강 관련 주장 방지
- (d) WHO FCTC 제13조에 따라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 관련 조치 적용
- (e) WHO FCTC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성분 공개
- (f) WHO FCTC 제5조3항에 따라 담배업계의 이해를 포함하여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 관련 모든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과 활동을 보호
- (g) 높은 수준의 인류 건강 보호를 고려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경우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촉, 판매 및 사용을 제재 또는 금지 등 규제
- (h) 적절한 경우, 이들 제품 사용을 위해 디자인된 기기장치에 상기 기술된 조치들을 적용

6. 협약 당사국, 협약 사무국 및 WHO는 FCTC 이행 보고와 같은 모든 종류의 관련 조사 및 보고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등 신종 및 신형 담배제품의 시장 발달과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지금까지의 담배규제 추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그리고 신종담배의 등장이 기존 담배규제 정책의 성과를 저해하는 상황에서 열린 WHO FCTC 제8차 당사국 총회는 여러 측면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먼저, 제1차 총회 이후 처음으로 제네바에서 개최되면서 역대 가장 많은 당사국이 참여한 총회로 기록되었다. 또한, 당사국 총회 최초로 기채택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검토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WHO FCTC의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결정이 도출되었다. 눈앞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앞에 놓인 장애물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담배 평생사용률, 성인과 청소년 모두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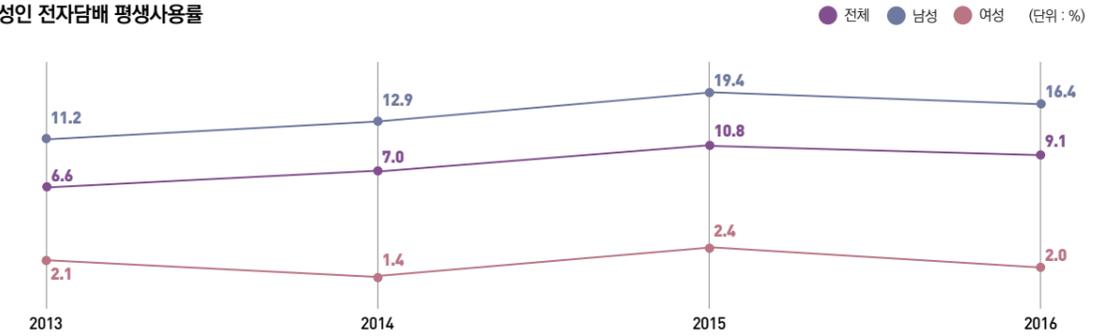
전자담배 평생사용률

Prevalence of Experimental Use of E-cigarette



전자담배 평생사용률은 조사대상자 100명당 전자담배 평생사용(경험)자 수로 산출하며, 전자담배 평생사용자는 '평생 동안, 즉 현재까지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전자담배 평생사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7%대였던 사용률이 급증하여 2015년에 10.8%에 이르렀다가 2016년에 다시 9.1%로 다소 주춤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나타난 청소년 전자담배 평생사용률은 2017년 기준 7.4%로, 2013년 이후 다소 증가하던 추세가 성인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10.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인 전자담배 평생사용률



* 최근 한 달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을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성인과 청소년 모두 전자담배 평생사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성인만큼이나 청소년의 전자담배 평생사용률이 높다는 점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2017년 말부터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비타스틱과 같은 전자담배 유사제품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 만큼 향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에 큰 폭의 감소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 전자담배 평생사용률



* 최근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분을

※ 출처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참고문헌



WHO. (2018). COP8 Documentation.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금연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발행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발행인 조인성
기획총괄 이성규
구성·집필 박경아, 이정은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11월호 예고



2018년 11월호에서는 담배로 인한 새로운 위험, 3차 흡연(Thirdhand Smoke)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접흡연으로 알려진 2차 흡연과는 또 다른 건강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3차 흡연의 정의와 3차 흡연이 위험한 이유를 최신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살펴보고 3차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